

석면조사, 해체제거, 감리 흐름도

기관석면조사
<p>주체: 건물 소유주, 임차인 대상: 건축물 연면적 50 m² 이상, 주택(부속건물포함) 200 m² 이상 절차: 그외 대상은 관련규정 참조 석면조사기관에 의뢰</p>
산업안전보건법

석면해체제거
<p>주체: 석면해체제거업자 대상: 석면제거면적 50 m² 이상 그외 대상은 관련규정 참조 절차: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7일 전신고, 신고증명서 받은후 해체제거 작업시작</p>
산업안전보건법

석면해체작업감리
<p>주체: 건설공사의 발주자 대상: 석면제거면적 800 m² 이상 고금감리: 2000 m² 초과 일반감리: 2000 m² 이하 절차: 감리인 지정현황신고서를 작업개시전 시장,군수,구청장에게 제출</p>

석면조사
<p>주체: 건물 소유자 대상: 건축물 연면적 500 m² 이상공공건물, 다중이용시설,학교 문화,집회의료시설, 노인시설, 어린이시설 (<430 m² 이상) 절차: 석면조사기관에 의뢰 보고: 조사후 1개월이내 건축물 석면지도,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포함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군수,구청장에게 제출, 석면안전관리법</p>

석면농도측정(실내작업장만)
<p>주체: 석면해체제거업자 절차: 석면해체제거완료후 석면조사기관등에 의뢰 방법: 시료채취수는 작업장별로 (A)^{1/3-1} 석면농도가 기준 (0.01 개/cc) 이하가 되도록 하고 보고: 석면농도측정결과 보고서 를 지방노동지청에 제출 산업안전보건법</p>

작업장주변 비산농도측정(내외부)
<p>주체: 석면해체제거업자 대상: 석면제거면적 500 m² 이상 석면배출허용기준 (0.01 개/cc)준수 절차: 석면조사기관등에 의뢰 석면해체제거작업중 매일측정(하루 7-12지점)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후 즉시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제출 보고: 석면안전관리법</p>

감리업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석면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 • 해체제거작업후 석면농도준수여부 • 계획서대로 작업수행여부 • 개인계획의 타당성 검토 • 인근주민 석면노출방지대책 • 관련법령준수여부

감리

보고: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장,군수,구청장에게 제출

